

# 의약품 단가계약 특수조건

1. **목적** : 이 조건은 충북대학교병원 및 오송임상시험센터에 납품하는 의약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,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 계약사항 및 규격등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.
2. **입찰품목 기준** : 본원에 납품할 약품은 양질의 의약품을 공급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입찰 품목은 별첨 “물품명세서” 와 같다.
3. **계약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 방법**
  - 가. 계약기간 : 계약체결일 ~ 2027.06.30.까지로 한다. 단, 필요시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(12개월 이내) 연장할 수 있다
  - 나. 물품대금은 선사용후, 정산처리방식으로 처리하며, 쌍방합의에 의하여 주단위 또는 월단위로 위 계약기간 중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.(단,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본원의 보유자금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지급)
4. **입찰 및 계약방법**
  - 가. 입찰방법은 입찰유의서와 동일하며, 계약단가는 원단위(미만은 절사)로 한다.
  - 나. 입찰과정에서 입찰에 방해를 주거나 계약체결 기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 본원 귀속과, 이후 본원 입찰배제 및 부정당업체 제재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.
  - 다. 계약 시 생산중단 등 타당하고 적법한 공급불가 품목 발생 시에는 해당부서의 확인하에 기 계약금액의 계약비율로 대체가능하며, 기 입찰조건에 부적합할 시에는 해당 품목만 단가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.
  - 라. 필수예방접종백신의 경우 보건복지부고시에 의한 백신비 이하로 산정 하여야 한다.
  - 마. 계약체결 품목 중 단가가 1원 품목인 경우 상한가가 인하되어도 계약단가는 변경되지 않는다.
5. **납품**
  - 가.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품목, 수량,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납품서와 함께 직접 현장(해당부서)에 납품, 진열, 정리하여야 하며,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(택배납품 불가)
  - 나. 계약자는 입찰품목 중 일반수액류, 영양수액류, 인공신장관류액 및 복막투석액류, 처치약류 등 배송이 필요한 약품은 병원이 지정한 사용부서까지 배송하여야 한다. **(휴일 포함)**
  - 다. 경장영양액류(가정간호에 한함) 및 투석액류 중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직접 배송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환자의 요청에 의한 장소에 배송하고, 병원에서 요구가 있을 시 인수증을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라. 계약업체는 의약품의 납품 및 배송 관련 병원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- 마. 단일 납품지시를 받은 의약품은 동일 제조번호(Lot Number)의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.
  - 바. 납품된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.
  - 사. 계약자는 납품지시(HLS물품조달시스템)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, 모사전송 및 유·무선통신에 의한 납품지시 방법도 또한 같다.[단, 진료 특성상 응급일 경우에는 즉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당일 오전에 납품 지시된 품목은 당일 17시 까지, 오전 12시 이후에 납품 지시된 품목은 익일 오전(12시) 까지 납품하여야 한다. (야간, 주말, 공휴일 포함)]
  - 아. 계약자는 계약된 약품의 안전재고량(최소 1개월분)을 확보하여 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안전재고량은 본원 약제부에서 추후 계약자에게 통보한다.
  - 자. 납품지시일 이내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납품기간 이내로 검수부서에 납품연기 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.
  - 카. 계약자는 의약품의 납품 시 계약품목의 사용기간(유효기간)이 검수일로부터 2년이상 보장되는 것으로 한다.

타. 예정구입량은 전년도 소모량에 근거한 추정자료로 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용예정량 초과 혹은 미달을 사유로 납품을 기피, 지연시키거나 이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제재를 취할 수 있다.

## 6. 납품지연약품에 대한 제3자 수의계약

- 가. 납품 지시된 약품의 미납품으로 인해 환자에게 투약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, 투약이 지연된 약품에 대하여, 적절한 진료를 위해 필요한 수량(적정재고량에서 현재고량을 차감수량 과 투약지연수량 중 큰 수량의미) 만큼 제3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, 수의계약 구매요구 수량은 포장단위로 한다.
- 나. 병원이 제3자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해 발생한 단가 차액은 미납한 계약 업체에서 보전하여야 한다.
- 다. 미납된 약품을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함에 있어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병원은 미납한 계약 업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## 7. 교환 및 반품

- 가. 원내 코드삭제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병원이 약품의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지체없이 교환 및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.(생물학적 제제, 소분약품 포함)
- 나. 심사평가원의 수가관리 적용기준(구입일과 소모개시일 일치)과 관련하여 기납품된 품목의 소분재고분에 대하여 반품을 할 수 있다.
- 다. 계약상대자는 계약 만료 시에 포장량 이하의 소분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병원이 요구하면 반품 처리하여야 한다.

## 8.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: 계약보증금은 월 이행예정금액 2배의 10/100이상을, 지체상금은 납품지시품목금액 × 지체일수 × 0.75/1000로 한다.

## 9. 계약의 변경 및 해지

- 가.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지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나. 계약기간 중 제조사의 품질 또는 생산중단 품목은 입찰공고상의 동일품목에 대한 타 선정 제조사로 변경함을 원칙으로 하고, 보험상한가 대비 동일한 계약률로 변경계약한다.
- 다.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보험기준약가 변동 시는 기준약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단가를 조정한다.
- 라.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의 급여여부 변경이 있을 경우, 보험상한가와 계약단가 중 낮은 단가로 계약단가를 적용한다.
- 마. 제3자 수의계약으로 납품되는 약품의 품목수가 계약품목의 10%가 넘거나, 총구매금액이 계약시 총금액의 10%가 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바. 병원의 진료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판단되어 시정 공문(납품촉구 공문 포함)이 3회 발송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사. 위 “가” 항의 사안이 아닌 사유로 계약품목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며, 부정 및 불량약품으로 납품한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을 병원에 귀속시키고, 익년도 입찰참가를 배제하며, 본 계약의 전 품목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## 10. 감액 및 환수

- 가. 의료보험 실구입가 품목을 상한가 이상으로 납품하거나, 보험코드, 상품명, 제조회사 등이 변경된 상품을 본 병원에 통보 없이 납품하여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삭감액에 대하여 환수조치하며, 상한가대비 계약비율로 조정하여야 한다.
- 나. 단가계약품목 중 타 기관(본 병원 감사실 포함)에 의하여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

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.

#### 11. 특약사항

- 가. 계약기간 중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정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험급여 정책을 적용하여 기 납품조건의 변경없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.
- 나. 계약기간 중에 약제급여 상한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상한가 대비 계약 비율로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한다.(단, 약가유연계약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‘별도합의 상한금액’에 동일한 계약 비율을 적용하여 계약 단가를 조정한다)
- 다. 공급된 당해 물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인적, 물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, 일체의 책임을 진다.

12. **관할법원** : 본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충청북도 청주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며, 계약문구상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거나 상관례에 따른다.

충북대학교병원계약담당